

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조 5,837억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.

7월 4일,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다.
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제출안에서 변동 없이 총 1조 5,837억원 규모로 의결되었다.

* '25년 고용노동부 본예산 35조 3,452억원 → 1차 추경 35조 6,255억원(+2,803억원)
→ 2차 추경 37조 2,092억원(+1조 5,837억원)

고용노동부는 신속한 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,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
통해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
다할 계획이다.

☞ 세부적인 사항은 이하 내용 참고
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최영범 (044-202-7026)
		담당자	서기관	남성욱 (044-202-7034)

고용노동부 2025년 새 정부 추경 예산 주요내용

- ◇ **[목적]** ❶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
❷ 체불근로자·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
- ◇ **[규모]** 구직급여·국민취업지원 등 11개 사업 총 1조 5,837억원

I. 총지출

□ 총 11개 사업(10개 증액, 1개 감액), +1조 5,837억원(+4.4%) 증액

○ 회계: ('25년 1차) 5조 8,146억 → (2차 추경) +2,575억

- ▲ 국민취업지원(+1,652억, 일반회계), ▲ 내일배움카드(일반)(+160억, 일반회계)
- ▲ 두루누리(+258억, 일반회계), ▲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(+128억, 일반회계)
- ▲ 취약계층취업촉진(+20억, 일반회계), ▲ 진폐위로금(+450억, 에특회계)
- ▲ 숙련기술장려(△92억, 일반회계,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공사 지연에 따른 불용)

○ 기금: ('25년 1차) 29조 8,109억 → (2차 추경) +1조 3,261억

- ▲ 구직급여(+1조 2,929억, 고보기금), ▲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(+101억, 고보기금),
- ▲ 클린사업장조성지원(+150억, 산재기금), ▲ 체불청산지원용자(+81억, 임채기금)

【 2025년 제2차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 (단위: 억원, %) 】

회계 · 기금별	'24년	'25년			증감 (B-A)	증감율 (%)
	본예산	본예산	1차 추경(A)	2차 추경(B)		
■ 총지출(a+b)	336,825	353,452	356,255	372,092	15,837	4.4
- 예산지출(a)	58,151	57,549	58,146	60,722	2,575	4.4
· 일반회계	51,306	51,469	51,766	53,891	2,125	4.1
· 특별회계	6,845	6,080	6,380	6,831	450	7.1
- 기금지출(b)*	278,674	295,903	298,109	311,370	13,261	4.4
· 고용보험	164,058	178,066	178,219	191,249	13,030	7.3
· 산재보험	98,222	100,176	100,242	100,392	150	0.1
· 임금채권	5,431	6,285	7,793	7,875	81	1.0

* 기금 지출 총액은 추경 대상이 아닌 장애인고용기금, 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된 것임

Ⅱ. 주요 내용

1 고용안전망 보강

- **(실업자)** 건설업·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 증가 →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 (+1조 2,929억, +18.7만명)

✓ 실업급여: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(1일 최대 6.6만원, 120~270일)

☞ (신청기간) '25. 7월~12월

(신청방법)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or 온라인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 통해 신청

- **(취업취약계층)**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고, 건설업 등 현안업종 특화유형(1만명) 신설 (+1,652억, +5.5만명(1유형 +2.7만, 2유형 +2.8만(특화 1만)))

✓ 국민취업지원: 저소득 구직자,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(통상 1년), 소득 지원(6개월, 요건 충족시)을 제공하는 실업부조제도(2차 고용안전망)

☞ (신청기간) '25. 7월~12월

(신청방법)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or 온라인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 통해 신청

2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

- **(고교 재학생)**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(+160억, 5,180명 → 7,000명(+1,820명))

✓ 일반고 특화훈련: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약 10개월 범위 내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(훈련비 전액 및 훈련수당(월 20만원 한도 제공))

- **(구직 청년)**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 해소 위해 비수도권 **채용박람회·취업프로그램 개최(+20억)**

✓지역·산업 특화 취업박람회: 중앙-지역 협업에 기반하여 지역·산업 특성에 맞는 취업 박람회 등 지역 주도 특화 취업프로그램 운영(비수도권 5개 권역)

☞ (개최시기) '25. 9월~

(참여방법) 개최 지역 등 확정 후 참여 방법 별도 안내 예정

- **(재직 청년)**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 대상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**컨소시엄훈련 확대(+101억, 공동훈련센터(30→35개소), 대중소상생아카데미(100→150개))**

✓컨소시엄 훈련: 대기업·대학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체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동훈련 실시, 정부는 인프라·프로그램 비용 등 지원

☞ [공동훈련센터] (신청기간) '25. 6. 11.~7. 31.

(신청방법)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(www.hrdkorea.or.kr)

☞ [대중소상생아카데미] (신청기간) '25. 7. 7.~8. 4.

(신청방법)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(www.hrdkorea.or.kr)

3 체불·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

- **(체불근로자)** 1차 추경(대지급금 +1,508억)에 이어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해 **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·규모 확대(+81억, 금리 인하(3개월 한시, 사업주 최대 3.7→2.7%, 체불근로자 1.5→1%))**

✓체불청산지원융자: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(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)와 체불근로자에게 융자(대출)를 실시하여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및 생계지원 도모

☞ (신청기간) '25. 7. 15.~10. 14.(융자실행일 기준)

(신청방법) 사업주융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(방문 전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 대상 사업주 확인 필요), 근로자융자는 근로복지넷(www.workdream.net) 통해 신청

- **(영세사업장)**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,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(이동식에어컨 등) 지원 확대 (두루누리 +258억, 폭염예방장비 +150억(+4,762개))

- ✓ 두루누리(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):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(월 270만원 미만)·예수인·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(국민연금, 고용보험) 80% 지원
- ✓ 폭염예방설비투자(클린사업장조성지원): 혹서기(6~9월) 폭염 취약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의 구입비용 일부(70%) 지원

- ☞ [두루누리] (신청기간) '25. 7월~12월
(신청방법) 근로복지공단·국민연금공단 지사 or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홈페이지(insurancesupport.or.kr) 통해 신청
- ☞ [폭염예방설비투자] (신청기간) '25. 7월
(신청방법)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 통해 신청

- **(특고·자영업자 등)** 소득 활동이 있는 특고·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(+128억, +8,500명)

- ✓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: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(특고·프리랜서·1인사업자 등)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 지급

- ☞ (신청기간)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
(신청방법)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or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 통해 신청

- **(진폐근로자)** 대법원 판결('25.3월)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진폐근로자에게 위로금 차액 지급(+450억, +2,308명)

- ✓ 진폐위로금: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진폐위로금(재해·장해·유족위로금)을 지급

참고

제2차 추가경정예산 총괄표 및 담당자 연락처

(단위: 억원)

연 번	사 업 명	'25년		주 요 내 용	담당자 현황
		본예산	2차추경 (순증)		
	① 고용안전망 강화				
1	구직급여	109,171	+12,929	▪ 지원 확대(+18.7만명)	고용지원실업급여과 (044-202-7370)
2	국민취업지원제도	8,457	+1,652	▪ 지원 확대(+5.5만명)	국민취업지원기획팀 (044-202-7193)
	②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				
3	내일배움카드(일반)	5,802	+160	▪ 지원 확대(1,820명)	인적자원개발과 (044-202-7308)
4	취약계층취업촉진	92	+20	▪ 5개 권역 취업박람회 개최	고용센터혁신추진단 (044-202-7316)
5	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	1,192	+101	▪ 공동훈련센터(+5개소) ▪ 대중소상생아카데미(+50개소)	기업훈련자원과 (044-202-7278)
	③ 체불·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				
6	체불청산지원용자	704	+81	▪ 금리 인하, 지원 확대	퇴직연금복지과 (044-202-7072)
7	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	218	+128	▪ 지원 확대(+8,500명)	여성고용정책과 (044-202-7446)
8	진폐위로금	837	+450	▪ 진폐위로금 차액 지원	산재보상정책과 (044-202-8835)
9	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	8,851	+258	▪ 저임금 근로자 지원 확대	고용지원실업급여과 (044-202-7350)
10	클린사업장조성지원	4,818	+150	▪ 지원 확대(+4,762개)	직업건강증진팀 (044-202-8891)